

대학원 학칙

(제정 2004. 1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2조(조직) ① 대학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 특수대학원에 경영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선교신학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4.7.24., 2016.2.11., 2018.3.1.>

제3조(교육목적) 본교의 헌장 및 건학이념을 달성하고 대학교육의 목적을 심오하게 추구하며 학술 연구와 진리탐구에 있어서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4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두며, 석·박사 학위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1.>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6.2.11.>

③ 대학원에 학과(전공)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및 위탁교육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5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개정 2010.3.30, 2010.11.8, 2011.4.1, 2011.11.11, 2012.10.5., 2013.1.4., 2013.6.27., 2014.9.1., 2016.2.11., 2016.3.1., 2017.3.1., 2018.3.1., 2019.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한 학과(전공)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3.9.4., 2016.2.11.>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6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3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16.2.11.>

제7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6.2.11.>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6.2.11.>

③ 삭 제 <2016.2.11.>

④ 삭 제 <2016.2.11.>

⑤ 삭 제 <2016.2.11.>

제8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③ 입학지원 절차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1.>

제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징계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6.2.11.>

② 재입학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1.>

제10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6.2.11.>

② 편입학 전형방법 및 편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1.>

제11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 내로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2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④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13조(휴학) ① 질병,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

② 휴학은 1회당 2학기(1년) 이내로 한정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총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유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 입대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

⑤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4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자
6.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심의한 자

[본조개정 2016.2.11.]

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제17조(수업연한) ①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3.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4년
4.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 (다만, 계약학과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과정: 1년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제를 통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8.7.18.>

③ 삭 제 <2016.2.11.>

제18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 6년, 박사학위과정 10년, 석·박사학위통합과정 12년으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9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이수제 수업은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27., 2018.7.18.>

② 수업은 일반대학원은 주간수업을, 특수대학원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 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2.11.>

②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21조(수료학점) ①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중등 2급 정교사: 72학점 이상 (입학 전 취득학점 30학점 포함)
2. 부전공(중등): 30학점 이상
3. 특수교사: 30학점 이상
4. 상담교사: 28학점 이상

③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2조(수업출석) ① 과목별로 결석일수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1., 2016.2.11.>

② 삭 제 <2015.3.1.>

제23조(학점교류) ① 국내·외 대학 간 협력 및 학생의 전공분야 연구를 위하여 학생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교류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재학기간 중 타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연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21학점, 특수대학원은 6학점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4조(통합수업)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사이에 학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석·박사학위과정 통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5조(선행학습) ① 학사학위과정의 재학생 중 평균성적이 3.3/4.5 이상으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석사학

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을 학사학위과정 학적부에 등재할 수는 있으나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 중 평균성적이 4.0/4.5 이상으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학위과정 교과목을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이수과목을 석사학위과정 학적부에 등재할 수는 있으나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6조 삭 제 <2016.2.11.>

제27조(시험) 시험은 정기 또는 수시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출결, 보고서 등으로 평가하며, 그 점수와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1.>

점 수	등급	평 점	점 수	등급	평 점
95점 이상	A+	4.5	90점 이상 95점 미만	A	4.0
85점 이상 90점 미만	B+	3.5	80점 이상 85점 미만	B	3.0
75점 이상 80점 미만	C+	2.5	70점 이상 75점 미만	C	2.0
70점 미만	F	0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성적 표기는 취득을 P, 미취득을 NP로 한다. <신설 2017.7.1.>

제29조(학점인정) ① 학업성적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2.11.>

②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7.18.>

제30조(수료인정) ①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수료자로 인정한다. <개정 2016.2.11.>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③ 삭 제 <2016.2.11.>

제5장 학위수여

제31조(학위수여) ① 제30조에 따른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학위를 수여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인증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졸업시험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2010.11.8, 2011.2.28, 2011.4.1, 2011.11.11, 2012.7.4,

2012.10.5., 2013.6.27., 2014.7.31., 2014.9.1., 2016.2.11., 2016.3.1., 2017.3.1., 2018.3.1., 2018.7.18., 2019.3.1.)

②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③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1.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에 명시된 [별표 제3호]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수여하고자 하는 자의 공헌의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

3 명예박사학위 수여일자는 본교 학위수여일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④ 학위를 취득한 자가 그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거나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⑤ 삭 제 <2016.2.11.>

제32조 삭 제 <2016.2.11.>

제33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1.>

제33조의2(종합시험)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2.11.>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은 석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이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35조(졸업시험심사) ① 졸업시험은 3명 이상이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졸업시험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6장 공개강좌, 위탁교육 및 연구과정

제36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③ 공개강좌는 원격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탁교육)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1.>

제38조(연구과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위한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은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7장 학생지도, 장학금 및 징계

제39조(학생지도)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학생의 수강지도, 연구논문지도 및 수학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를 둔다.

③ 학생은 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18.7.18.>

제40조(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및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41조(징계) ①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그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② 징계는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8장 대학원위원회

제4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제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재입학, 편입학,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 폐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위 심사,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개정 2016.2.11.]

제4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9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44조(학과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45조 삭 제 <2016.2.11.>

제46조 삭 제 <2016.2.11.>

제47조 삭 제 <2016.2.11.>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48조(학칙개정) ① 학칙은 조문별로 관련 부서가 관리한다. <개정 2016.2.11.>

② 조문 관리부서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대학평의원회 의원 1/3이상의 연명으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기획처장은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자문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 2016.2.11.>

⑥ 삭 제 <2016.2.11.>

제11장 준용

제49조(준용) 이 학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1.>

제50조(시행세칙) 이 학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 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학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의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이 특정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학칙의 시행이전에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학원 또는 학과 및 전공이 폐지될 경우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 및 전공은 재학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 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전기 전에 입학하여 휴학한자 및 제적자의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국제경영대학원 “경영관리학과” 또는 “유통경영학과” 또는 “국제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국제경영대학원 “영상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산업대학원 “영상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정보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산업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정보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산업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 제1항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 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2.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30조 및 제31조의 대체의학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5조 및 제31조 제1항의 일반대학원 신설 학과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0.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 제1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1.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31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2.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3.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의 문화산업대학원 공연영상예술학과는 201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6.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2. 28>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4. 1>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생명자원융합과학과 신설, 예술치료학과 신설, 탄소융합공학과 신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31조제1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 전기 전에입학하여 휴학한자 및 제적자가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일반대학원 “생산디자인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일반대학원 “환경과학과”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동대학원 “환경시스템학과”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경영대학원 “관광·외식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5. 상담대학원 각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이를 상담심리대학원 각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6학년도 전기 전에 입학하여 휴학한자 및 제적자가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일반대학원 “환경시스템학과”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동대학원 “환경생명과학과”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문화산업대학원 “공연영상예술학과” 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공연영상사진학과” 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상담심리대학원 “결혼·가족상담학과” 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결혼·가족상담심리학과” 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5. 상담심리대학원 “진로·직업상담학과” 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진로·직업상담심리학과” 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7.7.1.>

1. 일반대학원 “생명자원융합과학과” 또는 “전통식품산업학과” 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농생명식품산업학과” 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 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건설공학

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일반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일반대학원 “아트앤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경찰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대체의학대학원 “대체의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산업대학원 “자연의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문화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융합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5. 행정대학원 또는 경영대학원 각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경영행정대학원 각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석사학위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제31조제1항을 2018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일반대학원 “한중통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무역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일반대학원 “농생명식품산업학과”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조리식품산업학과”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개정 2017.3.1., 2018.3.1., 2019.3.1.>

일반대학원 정원표

과정	계열	모집정원	학 과	비고	과정	계열	모집정원	학 과	비고
석사 학위 과정	인문 · 사회 계열		경영학과			예능 계열		디자인학과	
			경찰학과					음악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육학과					3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합계	4계열	75명	33개 학과	
			금융보험학과		인문 · 사회 계열	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경찰학과			
			법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부동산학과			교육학과			
			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회복지학과			금융보험학과			
			상담심리학과			무역학과			
			아동·특수교육학과			법학과			
			영어영문학과			부동산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사학과			
			무역학과			상담심리학과			
			행정학과			신학과			
	소계	17개 학과	아동·특수교육학과						
	자연 · 과학 계열			간호학과			영어영문학과		
				농생명융합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문화기술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재활과학과		행정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소계	17개 학과		
				체육학과		자연 ·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소계	7개 학과	체육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기계공학과		소계	4개 학과		
				소방안전공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에너지관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계	6개 학과	환경생명과학과						
합 계	4계열	55명	27개 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소계	5개 학과					
			예능 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소계	1개 학과					

[별표 제2호] <개정 2017.3.1., 2018.3.1., 2019.3.1.>

특수대학원 정원표

대학원명	과정별	계 열	학 과 (전 공) 별	모집정원	비 고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국 글 금 사 연 예 외 중 창 행	제 로 용 회 기 술 식 소	경 컬 보 복 금 경 리 기 업 정	영 창 금 영 경 업 학	학 의 험 지 용 영 학	학 학 학 학 학 학	45명					
			10개 학과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공 한	연 지	영 문	상 화	사 산	진 업	학 학	38 명				
		공학·예능계열	스 용	즈 합	끼 디	재 자	능 인	학 학	과 과					
		이학·체육계열	방 자	사 연	선 의	학 학	과 과							
		예체능계열	스 예	포 술	즈 심	의 리	학 치	과 료	학 학			과 과		
		소계	8개 학과											
선교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신 (구약신학, 신약신학, 목회상담학, 역사신학, 선교학, 조직신학)								25 명			
		소계	1개 학과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결 혼·가 동·청 소년·상 중·독 상·담 진·로·직 업·상 담·심 리·학 과								40 명			
		소계	4개 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교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88 명 (양성: 46) (재교육과정: 42)			
		소계	1개 학과 (13개 전공)											
부동산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부 국	동 토	산 정	학 보	과 학				20명			
		소계	2개 학과											

[별표 제3호] <개정 2015.2.2., 2017.3.1., 2018.3.1., 2019.3.1.>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1. 석사학위

학 위 종 별	학 과 구 분
문 학 석 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학학과
문 헌 정 보 학 석 사	문헌정보학과
법 학 석 사	법 학 과
행 정 학 석 사	행정학과
경 찰 학 석 사	경찰학과
부 동 산 학 석 사	부동산학과
사 회 복 지 학 석 사	사회복지학과
상 담 심 리 학 석 사	상담심리학과
경 영 학 석 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금 융 보 험 학 석 사	금융보험학과
교 육 학 석 사	교육학과, 아동·특수교육학과
관 광 학 석 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 학 석 사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농생명융합학과
예 술 심 리 치 료 학 석 사	예술심리치료학과
문 화 기 술 학 석 사	문화기술학과
공 학 석 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에너지관리공학과
음 악 학 석 사	음악학과
디 자 인 석 사	디자인학과
체 육 학 석 사	체육학과
간 호 학 석 사	간호학과

2. 박사학위

학 위 종 별	학 과 구 분
신 학 박 사	신 학 과
문 학 박 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학학과
법 학 박 사	법 학 과
행 정 학 박 사	행정학과
경 영 학 박 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경 찰 학 박 사	경찰학과
상 담 심 리 학 박 사	상담심리학과
금 융 보 험 학 박 사	금융보험학과
부 동 산 학 박 사	부동산학과
교 육 학 박 사	교육학과, 아동·특수교육학과
관 광 학 박 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 학 박 사	환경생명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문 화 기 술 학 박 사	문화기술학과
공 학 박 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체 육 학 박 사	체육학과
예 술 심 리 치 료 학 박 사	예술심리치료학과

[별표 제4호] <개정 2017.3.1., 2018.3.1., 2019.3.1.>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 과	학 위 명
경영행정대학원	글 로 켈 창 의 학 과	지역창의학석사
	사 회 복 지 학 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행 정 학 과	행정학석사 (관광행정, 병원행정, 일반행정, 자치행정, 환경행정)
	국 제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국제경영학)
	금 융 보 험 학 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
	예 술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문화예술기획, 예술행정)
	외 식 조 리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외식조리경영, 호텔경영)
	중 소 기 업 학 과	경영학석사 (중소기업)
	창 업 학 과	경영학석사 (창업학)
문화산업대학원	공 연 영 상 사 진 학 과	공연영상사진학석사 (영화영상, 공연엔터테인먼트, 사진영상)
	융 합 디 자 인 학 과	미술학석사 (금속공예디자인, 목칠공예디자인, 섬유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방 사 선 학 과	이학석사
	스 포 츠 의 학 과	이학석사
	스 즈 끼 재 능 학 과	음악학석사 (스즈끼재능교육)
	자 연 의 학 과	자연의학석사
	한 지 문 화 산 업 학 과	한지문화예술학석사 (한지문화산업)
	예 술 심 리 치 료 학 과	예술심리치료학석사
선교신학대학원	신 학 과	신학석사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상담심리대학원	결혼·가족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결혼·가족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아동·청소년상담심리)
	중 독 상 담 심 리 학 과	상담심리학석사 (중독상담심리)
	진로·직업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진로·직업상담심리)
교육대학원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부동산대학원	부 동 산 학 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
	국 토 정 보 학 과	국토정보학석사

[별표 제5호] 삭 제 <2016.2.11.>

[별지 제1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p>위 사람은 본 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학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p>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p>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전주대 ○○(석) ○	

[별지 제2호]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학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전주대 ○○(박) ○

[별지 제3호] 일반대학원 명예박사 학위기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하였기에 본 교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전주대 명박 제 호

[별지 제4호]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 논문 제출자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총 장(학위) (인)

학위등록번호 :

[별지 제5호]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 非 논문제출자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
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이에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
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총 장(학위) (인)

학위등록번호 :

[별지 제6호] 대학원과정 수료증서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에서 소정의 이수를 필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인)

전주대학교 총 장 (학위명) (인)

[별지 제7호] 대학원과정 연구실적증명서

제 호

증 명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교부함.

년 월 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